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06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박성민 · 정동만 · 박형수
구자근 · 조배숙 · 윤영석
유상범 · 엄태영 · 이종욱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정보가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⑤ (생략)</p>	<p>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